
입 법 정 보

2017-2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3.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
4.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6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7
6.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수산부)	8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3
1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3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14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4
1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5
1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15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1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17
1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
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4.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22
26.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22
27.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23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4
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4
3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1.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2.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6
3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3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 자원부)	27
3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27
3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28
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8
3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9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30
4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1
42.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31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1
44.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외교부)	32
45.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3
4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3
4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6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6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7
5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5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9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0. 10. • 마감일자 : 2017. 11. 20.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3.21. 개정, ’ 18.3.22. 시행)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가.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규정(규칙 제8조)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규정함
- 나.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례 및 특례 규정(부칙 제2조, 제3조)
 - 1) 법 시행 이후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함
 - 2) 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0. 10. • 마감일자 : 2017. 11. 20.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3.21. 개정, ’ 18.3.22.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군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

획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규정(영 제6조의3)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확충계획 수립과정에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규정함

-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영 제7조)

총면적으로 되어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인 자동차 주차대수로 통일하되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기준을 변경함

- 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영 제13조)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3.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0. 11. • 마감일자 : 2017. 11. 20.
-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으로 함
 - 나. 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 방법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생물학적제제등은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이 되므로 전용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0. 11. • 마감일자 : 2017. 11. 20.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선임의 공정성과 선임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선출의 방식과 선거운동의 방법 등 임원 신분의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당선무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監事)의 의견 진술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직선거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5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
 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조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 나.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제19조제2항, 제3항,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6)
 엽연초생산자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담배사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인으로서 성격도 가졌으므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조합장 및 임원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 운영규정, 금품·향응 제공 금지 등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조합 임원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감사(監事)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 및 제36조)

현행 영업초 생산협동조합법은 감사(監事)의 직무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監査)와 그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감사(監事)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여 감사(監事)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안 제42조 내지 제45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과 그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호를 하여 선거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0. 11. • 마감일자 : 2017. 11. 20.

○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음.

이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가. “군인등” 및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군무원·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 다.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신설).
- 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마.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본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 등의 진정권보장,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진정의 각하사유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5장 신설).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6. 향민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0. 12. • 마감일자 : 2017. 11. 21.
- 「향만법」은 하나의 법률에 성격을 달리하는 향만과 향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와 향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향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향만기능의 재편과 향만 주변지역의 변화 요구를 제대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향만법」에서 향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향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향만정비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향만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이 법은 향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만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복합시설용지제도 도입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안 제2조제9호 및 제26조)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관제·보안 등 시설은 제외), 지원 시설, 항만친수시설이나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민간 부문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안 제3조)

국가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항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라.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기존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항만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마. 항만정비사업계획의 수립(안 제9조제2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고용 및 정주 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바. 항만정비사업구역의 지정 및 결합개발 허용(안 제11조)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5km 이내 지역으로서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50퍼센트(사업구역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00퍼센트) 이내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및 토지매도명령제 도입(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정비사업을 위하여 기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인·허가 의제(안 제19조제1항)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분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추가함.

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정비사업계획 수립 변경 검토, 사업구역내 항만정비사업의 총괄관리,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31조)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만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내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카.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타. 항만정비사업 시설 등의 귀속(안 제38조)

사업시행자가 항만정비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0. 12. • 마감일자 : 2017. 11. 21.

-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제를 시행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15조 제3항)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업자 및 단체에 변경정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정가변경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최소 2개월)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 간행물 및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 유통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매월 15일까지 알리도록 함.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됨에 따라 구간의 정가 변경 활성화를 통한 출판사의 원활한 재고도서 처리 및 경영개선,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이 기대됨.

- 나.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정가 적용일”을 삭제함(안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간행물 판매자는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에 따라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를 삭제함.

- 다.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한 구간의 판매시기를 정함(안 제15조 제4항 신설)

현재 구간의 변경된 정가는 출판사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과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현재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구간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그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12. • 마감일자 : 2017. 10. 16.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관제 및 항공정보 업무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10. 00. 공포, 2017. 12. 15. 시행) 됨에 따라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대상 변경, 국토관리사무소의 국토 관할구역 현행화, 부서명칭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0. 12. • 마감일자 : 2017. 11. 22.
-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진출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고, 매년 수립·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의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 제3항)

다. 매년 수립하여 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그 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0. 12. • 마감일자 : 2017. 11. 21.
-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

1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0. 13. • 마감일자 : 2017. 10. 17.
- 2017년 10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지역금융지원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전자정부국에 두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7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연구관 2명)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업무 효율성 및 유사업무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예방안전정책관 내 예방안전과와 재난영향분석과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개방형직위 중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을 개인정보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별표2 중 ‘행정사무관 사서사무관 전산사무관 학예연구관 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1명에서 2명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별표2의2, 3의2, 4의2, 5의2, 6의2를 삭제한다.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0. 13. • 마감일자 : 2017. 11. 22.
-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대중 골프장 병설 의무 및 조성비 예치 규제를 폐지하여 골프장의 경영자유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삭제(법 제14조 삭제)
- 나. 조성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법 제15조 삭제)
- 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삭제(법 제32조제2항제2호 삭제)
- 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부칙 삭제)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0. 13. • 마감일자 : 2017. 11. 22.
-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 대해 냉장고 등을 이용한 음료수 판매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서 자동판매기 음료수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음료수판매를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안 제22조제2호 개정)

1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7. 10. 13. • 마감일자 : 2017. 10. 18.
-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통하여 쌀 적정생산·소비촉진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여, 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 및 밭농업 기계화와 재배기술 보급 확산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업무와 국립농업과학관 전시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및 국정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을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를 식생활영양과로, 발효식품과를 발효가공식품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 과장급 및 국립농업과학원 원장·부장의 보임직렬/직급을 일원화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0. 13. • 마감일자 : 2017. 11. 3.
-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도 전원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특허 신청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 등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범위를 확대하며,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위원들의 전문분야별 평가로 전환하고, 외부인사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 참관할 수 있는 청렴 움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허심사 절차 명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안 제192조의5)

특허공고 시에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배점 및 평가지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세관장이 특허 신청기업의 특허신청 자격 여부를 검토한 서류 등을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 심사 종료 후 평가결과를 신청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특허심사 과정을 참관하고 비위사실 적발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등(안 제192조의8)

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위원 명단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직무태만·품위 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관세청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 (안 제192조의9)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집하고 특허 심사 시 위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0. 13. ● 마감일자 : 2017. 10. 19.
-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10.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에 두는 한시정원 4급 1명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0. 16. • 마감일자 : 2017. 11. 27.
-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1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10. 16. • 마감일자 : 2017. 11. 6.
-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등에 있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Role Model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

나.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 수리 조항을 명시

다.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정비(안 제18조의2)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함

라.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성예정지 내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변경)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허가사항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함

사.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

아. 정원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함

자.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등록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정원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차. 청문 절차(안 제21조) 및 벌칙 규정 추가(안 제23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산림 원상회복 명령, 등록된 정원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행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함

1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16. • 마감일자 : 2017. 11. 27.
- 「아동복지법」 개정('17.9.19.공포, ' 17.12.20.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보고 내용 등 규정(안 제13조의3 신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고 시기 및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2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16. • 마감일자 : 2017. 10. 23.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현장검역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감염병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을 독립된 사무기구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0.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한 각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 증원
-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할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
- 다. 인구정책실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 이관 폐지,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 중인 분석평가과 폐지 및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감축
- 라.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 반영

2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0. 16. • 마감일자 : 2017. 10. 19.
-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조세법령운용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4489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부착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비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기준인 대기관리권역 운행 일수를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조정(안 제29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 접수업무의 수도권청 위임 근거 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안 제32조제2항제16호)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별표 6 제2호바목)

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먹는샘물 제조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료류를 생산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욕구 충족과 수출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 5 일부개정)
 - 1)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먹는샘물 제조시설일부를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도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 구간에 설치토록 함.

24.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먹는샘물 공장내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의 추가허용에 따라 음료류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 지하수자원보호, 원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제한 완화에 따른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안제3조, 제7조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탄산수외에 제조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확대 허용함에 따라

- 지하수자원 보호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을 실제평균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2조)
 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이내로 포함하도록 함.
 협의회 구성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도록 함.
- 나.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 단축(안 제12조)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6.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상 용어를 현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해석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함. 여권 우편 수령시 민원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사실증명·여권사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27.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가. ‘이하 ‘영문성명’ 이라 한다’ 는 괄호 안 문장을 삭제함(안 제3조 제1항)
- 나. ‘영문성명’ 을 ‘로마자 표기 성명’ 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2 제1,2,3항)
- 다.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을 ‘외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 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이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조의2 제1항 제8호)
- 마. 시행령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거주여권 포함’ 이라는 문장을 삭제함.
- 바.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등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호를 신설함(안 제16조 제7호)
 - 제7호가 신설됨으로써 자연스레 기존 제7호가 제8호로 수정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로 수정됨.
- 사. 인터폴에 정보를 제공할 여권을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여권’ 으로 범위 확대(안 제20조 제3항)
- 아. 폐지된 업무인 ‘동반 자녀의 분리’ 를 삭제함(안 제22조 제1항)
- 자. 신설된 업무인 여권사실증명과 여권사본증명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 제3항, 제4항)
- 차. 사증란 추가 및 구 여권번호 기재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22조 제1항 제2호)
- 카. 사증란 추가시, 추가할 여권 사증란의 좌우면이 공백이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제2항)
- 타. 여권 민원서식 및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안 제45조)

28. 범칙픽에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 을 단축하는 등 범칙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지급범위를 확대함

나.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 에서 ‘3일 이상’ 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신청 절차 간소화

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17. • 마감일자 : 2017. 11. 27.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 나. 미성년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호)
- 다. 부동산개발업 양도·합병신고에 대해 수리필요 여부가 법률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3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31.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소득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수질관리와 주민생활 개선을 동시에 확보하고, 현행 규정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불균형 사항을 개선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가. 자전거레저특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입지근거 마련(안 제12조 3호 타목)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보호구역 중 자전거레저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가능 한 소득기반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추가(지자체 조례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거주민 및 보호구역 주민에 한정하여 운영을 허가)

나. 환경정비구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용도변경 간 불균형 해소
(안 제15조 1호 다목)

소매점 멸실 후 주택신축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현행규정 개선을 위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에서 음식점 등 타 용도로의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부여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7조)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변경

32.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명료화를 통해 절수기준의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변기에 대해 공급수압 기준 98kPa로 신설(안 별표2 제2호 나목)
수압조건의 명시 없이 사용수량 6L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준수가 어려운 바,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공급수압 기준을 98kPa로 신설
- 나. 절수기준 세부규정 보완(안 별표2 제2호 비고)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냉수 중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을 사용수량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료화 하고, 변기 사용수량 측정 시 수세핸들 조작시간 기준을 설정

3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하여 조건 충족 기간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선박 신규건조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의제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안 제2조)
조건부 면허의 기간 연장 사유에 선박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
-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4조, 별지 제2호의3)
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

3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공공기관에 부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의2제1항)

3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0. 26.
-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서 ‘혁신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3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주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가.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확대(안 별표 5 제3호)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특화형 주택(전용 44㎡) 공급확대 추진에 따라 1자녀 가구의 거주기간을 2자녀 이상 가구의 거주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0. 18. • 마감일자 : 2017. 11. 27.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신고증을 폐업신고를 위해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유서만 제출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38. 공직지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인)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0. 19. • 마감일자 : 2017. 11. 28.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재산 심사를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할 경우 특정재산(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재산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특정분야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 대해 부정합 청탁 알선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대해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직공직자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고자 하며,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법률구조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재산비공개대상자까지 확대 (안 제10조제3항, 제22조제10항)
- 나.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의 실체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42조)
- 다. 건강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기관 추가 지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제42조)
- 라.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안 제51조, 제52조, 제69조)

3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0. 19. • 마감일자 : 2017. 10. 24.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8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을 기술직군 9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담당 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0. 19. • 마감일자 : 2017. 11. 29.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농·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회원·기관·사업·회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총 11건의 인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며, 휴면협동조합 요건 및 시정 절차를 마련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의 및 법인격(안 제2조제5호, 제4조)
-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안 제116조)
- 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안 제119조)
- 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총회, 이사회 등 설치(안 제120조)
- 마.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안 제121조)
- 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잉여금 배당(안 제122조제1항)
- 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안 제122조)
- 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안 제123조제1항)
- 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등(안 제124조)
- 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안 제125조)
- 카. 협동조합 우선출자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 타. 인허가 간주제 도입(안 제56조, 제80조의2, 제85조, 제86조, 제101조, 제105조의2 신설)
- 파. 휴면협동조합 해산절차 간소화(안 제57조의2, 제102조의2)

41. 국방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0. 19. • 마감일자 : 2017. 10. 26.
- 국방부 본부 창조기획담당관과 민정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및 기타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 시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0. 19. • 마감일자 : 2017. 11. 28.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 별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것임.
- 가. 민간위원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 제2항 신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
- 나.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 심의회 폐지(안 제19조제3항)
 - 부진·형식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정부 내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6.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9.26)」이행의 일환으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지정

하는 자에게도 위탁하도록 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근거 마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제작 수입되는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디젤기관차 등)에 대하여도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 위탁근거 마련(제58조)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44.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9.

○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아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제00000호,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당연직 이사(안 제3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나. 공무원의 파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다. 직원의 파견(안 제5조)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

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조)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지침(안 제10조)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

45.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20.

○ 공항만 검역 현장 및 업무의 특수성을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에 반영하고 제복의 종류 및 착용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효율성 및 국립검역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착용수칙(안 제2조)

제복의 차림새 등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앞서, 제복착용의 기본수칙을 정함.

나.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안 제3조 및 별표 1)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에 전부개정령안의 내용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함.

다. 제복의 차림(안 제4조부터 제6조)

단일화 되어있던 제복의 차림을 정장과 근무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림새와 착용의 경우를 규정하여 근무상황에 맞는 제복의 착용을 도모함.

라.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등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 신설(안 제6조)
항만 검역소의 승선검역 등 업무현장에서의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를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4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29.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정비하기 위함.
또한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의 행정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개인정보 과다수집 관행 개선

- 1) 환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행정청이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은 신청인 1인에 대한 정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41호서식, 안 제49조제3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
-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11호서식)

나. 민원 처리기한 명확화(안 제36조)

- 1)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인가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인가여부 등 미통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행정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인가여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함.

47. 지동차 및 지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2. 19.
-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와 같은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등화장치 기준과 좌석안전띠 기준 등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제15조의3)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나. 등화장치 및 좌석안전띠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 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 별표 16)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안개등, 승하차 보조등, 주간주행등, 코너링 조명등, 후퇴등, 옆면보조등, 차폭등, 끝단 표시등, 주차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 반사기, 후부반사판 등에 대한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의 후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설치토록 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토록 함

- 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1조제64호, 제53조의3,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등은 운행 시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사고발생이 우려가 있는 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4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29.
- 군무원인사법 개정('16. 12. 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삭제 (안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8조)
 - 1)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 2)기능군무원 용어를 삭제
- 나. 중복/불필요 조문 삭제 및 불명확한 문구 수정(안 제18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1) 격오지 가산점 산정시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을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정
 - 2) '작성 부대장에게'를 '작성부대의 장에게'로 수정
- 다. 면접시험 불합격자 판단기준 보완 및 실기시험 위임 근거 조항 마련 (안 제21조)
 - 1)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가시 불합격 처리토록 신설
- 라. 채용 면접시험 위원편성시 1/2이상을 시험실 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군인·군무원·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구성(안 제21조의2)
 - 1) 채용시 객관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면접위원 1/2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편성('17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시 권고사항)
- 마. 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보완(안 제35조)
 - 1)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 2) 군무원 교수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49.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29.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 조기 안정

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시책사업 개편 등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개선(안 별표1)
 - 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 다. 교육환경개선비 정산을 해당연도 교육환경개선비 기준재정수요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안 별표2, 측정항목5)
 - 라. 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하향 조정 및 단계적 폐지(안 별표3, 측정항목3)
 - 바.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한 학교 수에 따른 자체노력 수요를 반영(안 별표3, 측정항목7)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2017.4.1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 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2조)
 - 나. 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 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학교u45916 가 동일 통학구역(학교군) 내 개발지구로 이전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쳐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전대상 학교’ 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별표1)
-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 단계적 폐지(안 별표2, 측정항목3)
- 마.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안 별표2, 측정항목7)

5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30.
- 가. 법률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 나. 특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서 오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별 대통령령에 남아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삭제
-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 1)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1)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하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 신설)

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재단에 대한 서류 및 물품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신설)

마. 사립학교법 시행령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29조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 1)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3조 신설)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신설)

아.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 1)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신설)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개정)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9조 개정)

차.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 1)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신설)

5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10. 20. • 마감일자 : 2017. 11. 20.

- 경찰서가 없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지

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생활안전과 등 4개 과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서에 형사과와 교통과를 한시조직으로 각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태안경찰서와 분할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